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3. 제안이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물을 정함(안 제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 제외)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과 같은 조 제4호아목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은 허가가 가능함.
-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와 부합하도록 소득기반 시설 중 농림업용 취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도서관을 허가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9. 21.~'17. 9. 2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주민공동이용 시설 중 '마을공동주차장'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1호라목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공동주차장'을 명시할 경우 규모, 유형,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미반영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